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406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년 10월 16일
- 라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3일

2. 제안이유

- 기금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추진을 위해 소관사항과 고유성격에 보다 부합하는 부서로 운용 주체를 이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기금관리공무원(제7조)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(제9조)을 ‘경제정책과장’에서 ‘창업정책과장’으로 변경하여 기금의 운용 부서를 이전
- 나. 기타 조문의 문구와 어휘를 정비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기금운용부서를 ‘경제정책과’에서 ‘창업정책과’로 변경하기 위해 기금관리공무원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‘경제정책과장’에서 ‘창업정책과장’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제출됨.

나.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부서의 변경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이하 “지방기금법”)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그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해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분임기금 운용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 지방기금법 제13조는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해 기금별로 기금 운용심의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,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의 작성,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등을 심의하도록 하면서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¹⁾으로 정하는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(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“기금운용심의회”라 한다)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, 장소, 참석자,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이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7조는 각 계정별로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,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며,

동 조례 제9조에서 각 계정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·운용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으로 하고, 각 계정별 당연직 위원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하고 있음.

< 기금운용관 및 기금운용심의회 관련 규정 >

- ▶ 기금운용관 관련 규정(제7조 관련)
 - 기금운용관 : 기금운용 담당정책관
 - 분임기금운용관
 - 가. 융자계정 : 소상공인담당관
 - 나. 투자계정 : 경제정책과장
 - 다. 사회적경제계정 : 공정경제담당관
 - 기금출납원
 - 가. 융자계정 : 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
 - 나. 투자계정 : 펀드조성 및 운용 담당사무관
 - 다. 사회적경제계정 : 사회적경제기업 담당사무관
- ▶ 기금운용심의회 관련 규정(제9조 관련)
 - 위원장 : 계정별 기금운용관
 - 당연직 위원
 - 가. 융자계정 : 소상공인담당관
 - 나. 투자계정 : 경제정책과장
 - 다. 사회적경제계정 : 공정경제담당관

- 한편 그동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(이하 “투자계정”)의 기금총괄은 경제정책과에서, 투자계정의 운용 목적인 펀드 조성 및 관리는 창업정책과에서 수행해 왔으나 ‘서울 Vision 2030 펀드’의 추진

으로 인해 기금 규모가 확대²⁾되면서 기금의 총괄부서와 운용부서를
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됨.
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투자계정의 분임기금운용관과 당연직 기금
운용심의회 위원을 ‘경제정책과장’에서 ‘창업정책과장’으로 각각
변경함으로써 기금의 총괄·운용부서를 ‘창업정책과’로 일원화한
것으로, 투자계정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
사료됨.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|
| 담당 조사관 | 연락처 |
| 최범준 | 02-2180-8056 |

2) 종전에 투자계정을 통해 조성된 서울미래혁신성장펀드(2019~2022)는 3조 6천억원 규모
(당초목표 1조 2천억원)이며, 서울비전 2030 펀드(2023~2026)의 조성목표는 5조원
으로 서울시 출자규모도 증가되어 1,751억원에서 3,500억원으로 증가됨.